

서울 행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1185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Redacted]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sup>1)</sup>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 [REDACTED]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 나. 재해의 발생

1) 고인은 피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REDACTED]호([REDACTED]톤, 선박번호 [REDACTE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잠수부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고인은 2021. 9. 2.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REDACTED]항에서 출항하였고, [REDACTED]시 [REDACTED]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위해 잠수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의 엔진스크류에 공기호스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고인은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면 위로 떠올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1. 9. 2. 11:12 이전에 사망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이는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

## 다.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고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27. 고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① 고인의 유족은 원고 외에 고인의 어머니 및 자녀 3명까지 총 5명이고 위 유족들의 유족보상을 받을 순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 중 1/5에 해당하는 [redacted]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 ② 장례비는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장례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이하 위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의 어머니 [redacted], 고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은 모두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고인에 의해 부양되었고 고인의 장례를 지낸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1순위 수급권자이다. 그럼에도 고인의 어머니 및 자녀들이 원고와 같은 순위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인 [ ] ,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 ] , [ ] , [ ] 이 있다.

2) 고인은 1985. 7. 29. [ ]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 ] ( [ ] 년생), [ ] ( [ ] 년생), [ ] ( [ ] 년생)을 두었다. 고인과 [ ] 는 1999. 6. 29.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9. 7. 3. 이혼신고를 하였다.

3) 고인은 원고와 재혼하여 2004. 2. 3. 혼인신고를 마쳤다. 고인은 2004년경 [ ] 시, 2008년경 [ ] 군 [ ] 면, 2009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 ] 시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다. 원고는 2004. 9. 23. 당시 고인의 주소지이던 [ ] 시 [ ] 동 [ ] [ ] 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다. 2019. 1.경부터 2021. 9.까지 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고인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고인과 원고가 서로의 예금계좌로 빈번하게 돈을 보내거나 받아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 ] , [ ] , [ ] 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모두 30대의 성인이었고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이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 ] 은 [ ] [ ]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위 주소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였다. 2019. 1.경부터 2021. 9.경까지 고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 ] , [ ] , [ ] , [ ] 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5) [ ] 은 2021. 10. 12. [ ] , [ ] , [ ] 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

른 유족급여의 청구와 수령, 합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4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에 피보전권리를 '어선원재해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 채무자를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고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례비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1. 11.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REDACTED]지방법원 [REDACTED]). 위 가처분 결정문의 당사자 표시에 기재된 [REDACTED]의 주소는 [REDACTED]군 [REDACTED]면이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의 주소는 [REDACTED]이다.

6)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6. 14. 피고지인을 [REDACTED], [REDACTED], [REDACTED]으로 하여 소송고지를 하였고, [REDACTED], [REDACTED]은 2022. 6. 15., [REDACTED], [REDACTED]은 2022. 6. 16. 각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REDACTED], [REDACTED], [REDACTE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0. 14.까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

7) 신청인은 2022.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같은 날 발급된 [REDACTE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인 [REDACTED]은 [REDACTED]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고, 아들인 고인은 1981년경부터 [REDACTED], [REDACTED] 등에서 살고 있어 고인이 [REDACTED]을 부양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확인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주변의 밭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가진 재산들이 있어서 고인을 비롯한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잘 모르고 제출한 것입니다. 고인은 [REDACTED]을 부양한 적이 없으며 피고에게 제출한 유족사망보험금 청구를 포기합니다.

사실확인인은 유족급여를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합니다.

8) 원고는 2021. 12.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고인의 장례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4. 고인의 장례 절차에 따른 분향소 비용 및 안치료, 화장장 사용료, 장의차 대절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는 2022. 10. 14.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고인의 자녀들과 모 [ ]이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유족급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2.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 이상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여 살아오면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등으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정한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1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2)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어머니인 [ ], 자녀들인 [ ], [ ], [ ]은 고인이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시와는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거나 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 ■■■■, ■■■■은 고인의 사망 당시 모두 30대의 성인이었으므로 고인의 보호·양육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은 원고에게 "고인이 ■■■■을 부양한 사실이 없고 신창임은 유족급여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 ■■■■, ■■■■, ■■■■은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 ■■■■, ■■■■, ■■■■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자녀·부모'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의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부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고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인데 반해, ■■■■, ■■■■, ■■■■, ■■■■은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자녀·부모에 해당하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위 유족들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다른 유족들과 유족보상을 받을 순위가 같다고 보아 유족급여 중 4/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마. 장례비에 관한 판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

례비로 지급하고, 그러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위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받을 자격을 '장례를 지냈는지 여부'로 제한하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고인을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를 맡아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고인의 다른 유족이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등으로 고인의 장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에서 정한 장례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는 장례를 지낸 유족인 원고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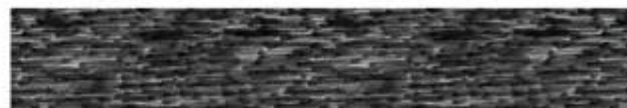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 관계 법령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제27조(유족급여)

-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 제28조(장례비)

-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제30조(유족의 순위)

- ① 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④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끝.

# 정본입니다.

2022. 11. 25.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